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광양·여천·향교·묘도·수도·향로·직산·화산·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공시·시·용역

2026. 08.

목 차

I. 일반사항

II.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III.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IV.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I.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제3항의 [별표 4의 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에 의합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2]에 따라 우리부가 정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2025-165호, 2025.10.01.)」에 따라 평가하며, 경력 및 실적의 증명서류는 기술자의 등급 및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모든 평가를 시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3.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 및 실적은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계산함).
4.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환경평가업체의 수행실적(수행건수, 수행금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만 평가합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은 증명서류 첨부 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6.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하며, 업체수에 따른 배분표는 【별표2】을 참조합니다.
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합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 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합니다.
11. 해외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기관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합니다.
 -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12.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 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기관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13.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합니다.

14.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총괄책임평가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5.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당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17. “환경영향평가 등”이라 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합니다.
18. 본 용역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에 의한 “단순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19.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 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자 능력평가

가. 평가대상

- 1) 평가는 총괄책임평가자 1인(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2인(환경 1인, 환경(해양) 또는 항만 및 해안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2인(환경)으로 총 5인에 대해 평가합니다.
- 2) 분야별 책임평가자의 환경분야 중 해양(또는 항만·해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환경분야에는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에 해당합니다.
※ 총괄 책임평가자(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2인)는 전문분야 구분 없이 투입이 가능
- 3)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이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합니다.

구 분	자격조건	분야	가중치	인원
총괄 책임평가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100%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중급이상	환경분야	50%	1인
		환경분야(해양) 또는 항만 및 해안 분야	50%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초급이상	환경분야	50%	1인
		환경분야	50%	1인

※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상호 겸임할 수 없습니다.

나. 참여평가자의 평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 1)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 2)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1.)」에 따라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라 산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경우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합니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 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릅니다.

다.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

1) 환경분야(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우리청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가) 항만·해안분야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사업,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건설사업 포함)의 환경관련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100%

나) 항만·해안분야 용역사업(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조사용역,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환경업무로 참여한 경력, 전문분야가 항만·해안 분야를 제외한 사업의 환경관련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60%

2) 항만·해안분야 책임평가자

- 평가인력의 경력은 항만·해안분야 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건설사업 포함)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경력 및 발주기관·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설계,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중 전문 분야가 항만·해안분야 경력 : 100%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나) 기타 분야사업 용역 중 항만 및 해안분야 사업 설계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공사 감독, 감리(상주, 기술지원)관련 업무 및 관리자 경력 중 전문 분야가 항만 및 해안분야 경력 : 80%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의 항만·해안분야 계획경력, 항만·해안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항만·해안분야의 강의 경력 : 60%

라. 참여평가자의 실적평가기준

1) 환경분야(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가) 최근 10년내(공고일 기준)에 준공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종 준공실적으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지분율 기준)인 사업과 참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경우 1차년도 이상 누계 준공실적 1억원 이상(지분율 기준)인 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나) 참여평가자의 수행실적은 아래 실적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실적 1건에 대한 실적계수 적용

구 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0.6	0.36
환경영향평가	1.0	0.6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0.36
사후환경영향조사	1.0	0.60

주)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별표 1> 참조

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년도 이상 차수준공의 경우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2) 항만 및 해안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가) 항만·해안분야(비관리청 항만공사, 민간투자사업, 어항건설사업 포함) 용역사업 중 최근 10년 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사업(도시계획분야의 경우 종합계획 포함,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제외)에 한하여 적용하며,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과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일괄입찰(기본 및 실시설계) 및 대안입찰(대안설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실시설계)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자로 결정되어 해당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업무여유도

1) 환경분야(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가)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복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나)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현재 수행중인 전체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항만 및 해안분야 책임평가자

가) 해당용역 평가대상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기술지원기술자 제외) 등 다른 설계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 단, 항만·해안분야 기술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영향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업무중복내용은 해당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기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기술자 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한글파일, CD 1부, 붙임양식준수)

바. 교육훈련

－ 참여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관련(건설기술관련 포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 항만·해안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사. 과업의 이해도(前次)

－ 과업의 이해도는 해당용역의 前 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PQ대상자) ÷ 총 평가인원수

－ 전(前)단계 용역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 전차평가대상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만 적용합니다.

아. 이적계수

－ 공고일 현재 참여평가자의 최근 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직전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 직전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 1)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및 기타용역 중 전체 준공용역금액이 1억원이상(지분율 기준)인 용역사업에 대해 평가합니다.

* 실적 및 금액 1건에 대한 실적계수 적용

구 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0.6	0.36
환경영향평가	1.0	0.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0.36
사후환경영향조사	1.0	0.60

주)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별표 1> 참조

- 2) 수행실적 평가는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가)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합니다.

나)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합니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합니다.)

나. 신용도

- 1)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합니다.

나)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합니다.

- 2)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가) 건설(항만) 또는 환경분야 신기술·특허·실용신안·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나)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합니다.

다) 환경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거 환경신기술로 인증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라) 항만환경분야에 대한 산정은 각각의 분야별 가중치(항만해안분야 사업관련 환경관련분야 건당 1.0, 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 건당 0.6)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마)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합니다.

바)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 실적 건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2)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

* (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로 하며, 설립 연수가 3년 이상 된 업체가 3년간 자료를 미제출시는 제출자료 합계/3)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합니다.

라)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비율에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합니다.

3) 활용실적

가)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환경분야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항만·해양분야의 신기술은 용역업자가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다) 활용실적 산정은 각각의 분야별 가중치(항만·해양분야 사업관련 환경관련 분야 건당 1.0, 항만·해양 또는 환경 분야 건당 0.6)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라)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여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마)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바) 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의거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환경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 항만·해양분야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아)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일괄 배점 부여)

라. 공동도급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 업체능력 평가

1)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총괄책임평가자의 능력평가에 대한 평가는 우리 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제7호 서식)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시는 0점 처리합니다.

*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로 실시합니다.(별표 2, 첨부 1 참조)

바. 하도급 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 확인 후 적용합니다.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계	67.6	
	① 자격 및 등급	소 계 14	절대평가
		총괄책임평가자 3	
		분야별책임평가자 6	
		분야별참여평가자 5	
	②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소 계 17	절대평가
		총괄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 6	
	③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소 계 17	절대평가
		총괄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 6	
	④ 업무여유도	소 계 17	절대평가
		총괄책임평가자 4	
		분야별책임평가자 7	
		분야별참여평가자 6	
	⑤ 교육훈련	교육훈련 1.6	절대평가
	⑥ 과업의 이해도	전차용역 1	절대평가
	⑦ 이적계수	최근 6개월간 이적현황	절대평가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계	32.4	
	① 최근 5년간 실적	소 계 14	절대평가
		건 수 7	
		금 액 7	
	② 신용도	계 9	절대평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6	
		재정상태 건실도 3	
	③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6	절대평가
		개발실적 2	
		투자실적 2	
		활용실적 2	
	④ 공동도급	공동도급 1.0	절대평가
	⑤ 업체능력평가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2.4	상대평가
	⑥ 하도급 준수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	절대평가
	⑦ 청년고용	최근 3년간 신규고용율	미적용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3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6	<table><tr><th>구분</th><th>환경영향 평가사</th><th>해당 기술사</th><th>특급 평가자</th><th>고급 평가자</th><th>중급 평가자</th><th>초급 평가자</th></tr><tr><td>총괄</td><td>100%</td><td>－</td><td>－</td><td>－</td><td>－</td><td>－</td></tr><tr><td>분야별 책임평가자</td><td>－</td><td>100%</td><td>100%</td><td>90%</td><td>80%</td><td>－</td></tr><tr><td>분야별 참여평가자</td><td>－</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90%</td></tr></table>	구분	환경영향 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100%	100%	90%	80%	－	분야별 참여평가자	－	100%	100%	100%	100%	90%										
	구분	환경영향 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100%	100%	90%	80%	－																																		
	분야별 참여평가자	－	100%	100%	100%	100%	90%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5	<table><tr><td>총괄</td><td>100%</td><td>－</td><td>－</td><td>－</td><td>－</td><td>－</td></tr><tr><td>분야별 책임평가자</td><td>－</td><td>100%</td><td>100%</td><td>90%</td><td>80%</td><td>－</td></tr><tr><td>분야별 참여평가자</td><td>－</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90%</td></tr></table>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100%	100%	90%	80%	－	분야별 참여평가자	－	100%	100%	100%	100%	90%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100%	100%	90%	80%	－																																			
분야별 참여평가자	－	100%	100%	100%	100%	90%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우리부가 정한 설계 등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이하 모든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에 적용)																																							
		<항만·해안분야 참여평가자>																																							
		<table><tr><td>구 분</td><td>고급기술인 이상</td><td>중급기술인</td><td>중급기술인 미만</td></tr><tr><td>분야별 책임평가자</td><td>100%</td><td>50%</td><td>0%</td></tr></table>	구 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미만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50%	0%																															
구 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미만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50%	0%																																						
(2)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17]																																								
(가)총괄	4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 항만·해안분야사업의 환경관련 용역(환경영향평가 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6	<환경분야 참여평가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7">경력년수</th></tr><tr><th>17년이상</th><th>15년이상</th><th>13년이상</th><th>10년이상</th><th>9년이상</th><th>7년이상</th><th>7년미만</th></tr><tr><td>총괄</td><td>100%</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r><tr><td>분야별 책임평가자</td><td>100%</td><td>100%</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r><td>분야별 참여평가자</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90%</td><td>80%</td></tr></table>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괄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평가자	100%	100%	100%	100%	100%	90%	80%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괄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평가자	100%	100%	100%	100%	100%	90%	80%																																		
		<항만·해안분야 참여평가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경력년수</th></tr><tr><th>10년이상</th><th>8년이상</th><th>6년이상</th><th>4년이상</th><th>4년미만</th></tr><tr><td>분야별 책임평가자</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구 분	경력년수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90%	80%	70%	60%																						
구 분	경력년수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90%	80%	70%	6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경평가 참여 능력 평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4	○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환경분야 참여평가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실적건수</th></tr><tr><th>15건이상</th><th>13건이상</th><th>11건이상</th><th>9건이상</th><th>9건미만</th></tr><tr><td>총괄</td><td>100%</td><td>100%</td><td>90%</td><td>80%</td><td>70%</td></tr><tr><td>분야별 책임평가자</td><td>100%</td><td>100%</td><td>90%</td><td>80%</td><td>70%</td></tr><tr><td>분야별 참여평가자</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90%</td></tr></table>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항만·해안분야 참여평가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실적건수</th></tr><tr><th>10건이상</th><th>8건이상</th><th>6건이상</th><th>4건이상</th><th>4건미만</th></tr><tr><td>분야별 책임평가자</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100%	100%	90%	80%	7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90%	80%	70%	분야별 참여평가자	100%	100%	100%	100%	90%	구분	실적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90%	80%	70%	60%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100%	100%		90%	80%	7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90%	80%	70%																																												
분야별 참여평가자	100%	100%	100%	100%	90%																																												
구분	실적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90%	80%	70%	60%																																												
	(가)총괄	4	<환경분야 참여 평가자>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Σ [계약금액×(공고일 기준 향후 1년 이내의 잔여개월수 / 총계약기간) / 10인]]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잔여개월 산정시 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6																																															
	(4) 업무여유도	[17]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경평가 참여 자			<항만·해안분야 참여평가자>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 300%미만, 300%~350%미만, 350%~400%미만, 400%~450%미만, 450%이상 등으로 차등 평가 <table><tr><td>구분</td><td>300% 미만</td><td>300~350%</td><td>350~400%</td><td>400~450%</td><td>450% 이상</td></tr><tr><td>점수</td><td>3.5</td><td>3.15</td><td>2.8</td><td>2.45</td><td>2.1</td></tr></table>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공고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구분	300% 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 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구분	300% 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 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능력 평가	(5) 교육훈련	[1.6]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단, 항만·해양분야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도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평가용역에 참여한 평가대상 참여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 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PQ대상자)/총 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직장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 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 등 수행건수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환경영향평가 등 수행금액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기타사업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단, 기타분야의 실적 및 금액은 만점기준 최대 60%만 인정)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5">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th></tr><tr><td rowspan="2">유사평가 실적건수</td><td>건수</td><td>10건이상</td><td>8건이상</td><td>6건이상</td><td>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배점</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r><td rowspan="2">유사평가 실적금액</td><td>금액</td><td>250%이상</td><td>200%이상</td><td>100%이상</td><td>50%이상</td><td>50%미만</td></tr><tr><td>배점</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 실적건수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 실적금액	금액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배점	100%	90%	80%	70%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 실적건수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 실적금액	금액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r><tr><td>대기업/중기업</td><td>100%</td><td>80%</td><td>70%</td></tr><tr><td>소기업</td><td>100%</td><td>90%</td><td>80%</td></tr></table>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sum(\text{항만·해안분야 환경관련 건당 } 1.0 \times A \times B) + \sum(\text{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 건당 } 0.6 \times A \times B)$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table><tr><td>구 분</td><td>신기술</td><td>특 허</td><td>실용신안</td><td>연구보고서*</td></tr><tr><td>계 수</td><td>1.0</td><td>0.6</td><td>0.3</td><td>0.1</td></tr></table>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table><tr><td>구 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tr><td>특허</td><td>1.0</td><td>0.8</td><td>0.6</td></tr><tr><td>실용신안 / 연구보고서</td><td>1.0</td><td>0.8</td><td>-</td></tr></table>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table><tr><td>구분</td><td>1.5%이상</td><td>1.5% 미만 1.2% 이상</td><td>1.2% 미만 1.0% 이상</td><td>1.0% 미만 0.75% 이상</td><td>0.75% 미만 0.5% 이상</td></tr><tr><td>점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구분	1.5%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구분	1.5%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 $\Sigma(\text{항만·해안분야 환경관련 건당 } 1.0 \times A \times B \times C) + \Sigma(\text{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 건당 } 0.6 \times A \times B \times C)$ ※ 환경분야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항만·해양분야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table><tr><td>활용건수 (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tr><td>활용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tr><td>가중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table><tr><td>구 분</td><td>신기술</td><td>특 허</td><td>실용신안</td><td>연구보고서*</td></tr><tr><td>계 수</td><td>1.0</td><td>0.6</td><td>0.3</td><td>0.1</td></tr></table>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table><tr><td>구 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tr><td>특허</td><td>1.0</td><td>0.8</td><td>0.6</td></tr><tr><td>실용신안 /연구보고서</td><td>1.0</td><td>0.8</td><td>-</td></tr></table> ※ 환경분야의 특허 및 실용실안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항만·해안분야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	0.8	-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	0.8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4)공동도급	[1.0]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업체능력평가	[2.4]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해 평가
	(6)하도급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한 '별점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7)청년고용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0.1 · 1% 이상 : 0.1점 0.2 · 2% 이상 : 0.2점 0.3 ·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frac{\text{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text{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times \text{소속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표 1】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구분	용역분야	평 가 대 상
유사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중 어항시설 기본계획 -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 항만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 어촌어항법, 항만법, 신항만촉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1) 외곽시설 (2) 계류시설 (3) 그 밖의 항만 및 어항시설 - 항만법, 신항만촉진법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기타사업	유사사업 의 개발사업	○ 유사사업 이 외의 기타사업에 대한 실적은 실적계수 0.6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적용점수는 해당 배점의 60%(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별 세부평가방법)하한 실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산정방법(예시) - 환경분야 책임평가자 : 유사사업 2건 + 기타사업 30건 일 경우 → (2×실적계수 1.0)+(30×실적계수 0.6)=20건이나, 9.8건(2건+7.8건(13건의 60%)) 적용 - 환경분야 참여평가자 : 유사사업 2건 + 기타사업 30건 일 경우 → (2×실적계수 1.0)+(30×실적계수 0.6)=20건이나, 7.4건(2건+5.4건(9건의 60%)) 적용

【별표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업 체 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첨부 1】 총괄 책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2.40	○ 능력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우	1.92	○ 능력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미	1.44	○ 능력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기관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양	0.96	○ 능력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시기 부족한 경우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가	0.48	○ 능력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가 거의 없는 경우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경우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IV.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용역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각 항목 작성기준 참고)

나. 공동도급시는 참여 지분율(PQ평가 시 활용됨)을 기재 하여야 하며, 대표 회사를 결정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 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목차는 반드시 평가항목의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우리 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2.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내 용		서 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제1호 서식
○ 제출문, 서약서, 참여동의서		제2호 서식
○ 참여업체 현황		제3호 서식
1. 참여기술자	▶ 참여평가자 현황 ▶ 참여평가자의 등급 ▶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 총괄책임평가자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 참여평가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실적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2.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3. 신 용 도	▶ 업무정지 ▶ 부실발점 ▶ 재정상태 건실도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투자실적 ▶ 활용실적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서식
5. 업무 여유도	▶ 총괄책임평가자 ▶ 분야별 책임평가자 ▶ 분야별 참여평가자	제17호 서식
6. 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제18호 서식
7. 청년고용	▶ 신규고용율	제19호 서식
8. 자기평가서		제20호 서식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목차는 반드시 평가항목의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제출부수 : 총 6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1부) : 자기평가서,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포함 제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부분(1부) : 상기 원본의 사본
 -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별도 제본 4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3부, 흑백제본)
- 3)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크 기 : A4(210mm × 297mm)
 - 지 질 : 겉표지[백상지(80g/m²이상)], 본문용지[백상지(80g/m²)]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세로방향으로 세워서)
- 4)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2부(원본 1부, 사본 1부는 필히 원본 대조필)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찾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

【제1호 서식】(※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원 (부)	본 (본)	3cm
3cm	3cm	

*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분인지 여부 명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2026. .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직 급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00)0000-0000 팩 스 : 00)0000-0000 E-mail :
주소 :

제 출 문 (24Point)

용역명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공사시) (16Point)

귀 청의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의거,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4Point)

-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2.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4부.

2026. .

대표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참여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24Point)

서 약 서(24Point)

○ 용역명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공사시) (16Point)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본 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대표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참여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24Point)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주의사항

1. 공동수급인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참여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업체에서는 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기술인력 현황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자격사항	자격증번호	입사일자 (등록일자)	비고
총 괄	가						
	나						
자연생태 환경	가						
	나						
토지환경	가						
	나						
생활환경 및 기타	가						
	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사 진 (반명함판) (3cm×4cm)	
환경 영향 평가사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졸업·수료)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근무처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 타 자 격	자 격 명(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자격취득이전 실무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직무내용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급) 120g/㎡)

【제4호 서식】 참여평가자 현황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〇세)	자격중 (취득일)	기술등급	이직일 (일수)	소속 및 직위
총괄 책임평가자						(일)	
분야별 책임 평가자	환경분야 (00)					(일)	
	환경 또는 항만 및 해안분야 (00)					(일)	
분야별 참여 평가자	환경분야 (00)					(일)	
	환경분야 (00)					(일)	

* 주의사항

1.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해양, 토양환경, 자연환경
2.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책임평가자는 반드시 지분이 많은 업체에서 투입하여야 함. 또한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는 참여평가자 1인 이상 투입해야 함.
3.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건설기술자의 범위]에 의함.(이하 동일)
4.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의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안에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기
5. 전 직장(현재 근무중인 직장의 앞 직장)의 근무년수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첨부
6. 참여기술자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제5호 서식】 참여기술자의 등급

가. 총괄책임평가자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만세)	최종학교 (졸업년도)	기술등급	
자격증 (취득일)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총경력	년월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월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만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속 (직위)	비고
환경분야							
환경분야 또는 항만 및 해안분야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만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속 (직위)	비고
환경분야							
환경분야							

* 주의사항

-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본 용역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원내 한하여 적정인원 작성

【제6호 서식】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 참여분야 :

성명		주민등록번호		000000(뒷자리 생략)						
주소										
전문분야(전공)										
○ 학 력										
기간		학 교 명				학 위				
○ 자 격										
자 격		취 득 일				등 록 번 호				
○ 이력(근무처)										
근 무 기 간		근 무 처								
0000.00.00~0000.00.00		00지방해양수산청(예시)								
0000.00.00~0000.00.00		00지방해양수산청(예시)								
○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										
용역명	평가구분	사업구분	실적 계수	용역 기간	참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당시 참여분야	참여당시 소속회사	발주기관	비고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유사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타사업								
합계 (각 페이지 하단에 소계 기입)										
○ 해당분야 경력(별첨 및 양식 변경 불가), 아래 예시 참조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발주자		공사종류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 위	가중치	환산일			
예) 2000.01.01~2000.12.31 (112일)	00항 개발사업 환경(사전 소규모 포함) 영향평가 00지방해양수산청		항만	환경 수질관리	환경영향평가 이사	100%	112일			
예) 2000.01.01~2000.12.31 (50일)	00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00지방해양수산청		항만	환경 수질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 이사	100%	50일			
예) 2000.01.01~2000.12.31 (70일)	00항 정비공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 및 시설계 연구용역 포함)용역 00지방해양수산청		항만	환경 수질관리	환경영향·사후환경·사전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사	60%	42일			
예) 2000.01.01~2000.12.31 (133일)	00~00간 우회도로 건설공사(타당성 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 계 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용역 00지방국도관리청		도로	환경 수질관리	환경영향·사후환경·사전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사	60%	80일			
소 계									일	
환산 경력일 : 0,000일 / 00년 00월										

* 주의사항

-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실적은 해당분야의 용역에 한하여 작성
-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을 ()내에 명기함
- 자격증 사본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2026. 00.

업 체 명

*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는 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고, 3부는 업체명을 미표기(지분율도 미표기)하여 흑백 별권으로 제본하여 제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사업 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 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해당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2.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계획 등과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계획의 적정성

【제8호 서식】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 교육이수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 평가자	환경분야				
	환경분야 또는 항만 및 해안분야				
분야별 참여 평가자	환경분야				
	환경분야				

* 주의사항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평가자가 세부평가기준에서 명시한 교육훈련에 한함
3.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 1주)
4.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표기

나. 전차용역관련 참여 기술자

성 명	분 야	참여수행 정 도	전차용역명	참여기간	소속회사
		・ 총괄책임평가자 ・ 분야별 책임평가자 ・ 분야별 참여평가자			

주) 전차용역 참여기술자의 현재 보유여부 명시

【제9호 서식】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건수·금액)

가.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B)	실적	전략환경영 향평가용역			
		환경영향 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용역			
		사후환경영 향조사용역			
		계			
	금액	전략환경영 향평가용역			
		환경영향 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용역			
		사후환경영 향조사용역			
		계			
유사용역 환산실적 (A×B)	건 수				
	금 액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구분	용역 개요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실적 계수 (C)	실적 금액 (A×B×C)	실적 건수 (1×B× C)	비고
	용역명 (용역내용)	발주기 관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00.00.00 ~ '00.00.00 (00일)		00%	환경영 향평가	유사 사업	1			
	계		~								
하도급			~		1.0						
	계		~								
합 계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구분	용역 개요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실적 계수 (C)	실적 금액 (A×B×C)	실적 건수 (1×B× C)	비고
	용역명 (용역내용)	발주기 관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00.00.00 ~ '00.00.00 (00일)		00%	환경영 향평가	유사 사업	1			
	계		~								
하도급			~		1.0						
	계		~								
합 계											

*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로 지분 확인 불가 시, 용역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3.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10호 서식】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 전차용역관련 용역업자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비	착공일	준공일	발주처	비고

주) 해당 준공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것에 한함.

【제11호서식】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대표자)	종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업무정지					
	합계	()회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평가자

성명	종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합계	()회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12호 서식】 부실별점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별점점수	누계평균부실별점	비고
계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나. 참여평가자

참여기술자 (성명)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별점점수	누계평균부실별점	비고
계							
총괄책임평가자 ()							
분야별 책임 평가자	환경분야 ()						
	항만·해안 또는 환경분야 ()						
분야별 참여 평가자	환경분야 ()						
	환경분야 ()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제13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등급)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 도			
참여지분율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합 계			

* 주의사항

1. 공동수급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제14호 서식】 개발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건수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연구 보고서							
	소 계						
합 계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5호 서식】 투자실적

가. 참여업체별 투자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기술 개발투자액 (A)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총매출액 (B)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지 분 율(C)				
투자실적(A/B×C)(%)				

* 주의사항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A)	건설부문 총매출액(B)	투자비율 (A/B)	비고
계		건	천원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A)	건설부문 총매출액(B)	투자비율 (A/B)	비고
계		건				

* 주의사항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6호 서식】 활용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분야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연구 보고서							
	소 계						
합 계							

* 주의사항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내 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산출식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 보고서							
계	건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내 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산출식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 보고서							
계	건						

* 주의사항

- 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을 기재

【제17호 서식】업무 여유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평가자 현황

구 분	성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수)	중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수)	1인당 중복 금액 (천원)	비고 (협의완 료, 중지 등)
총괄 책임 평가자	000	- 용역명 : - 발주기관 : - 용역내용 : - 계약금액(천원) : (이하 동일)				
계		점수 : , 계산식 :				
분야별 책임 평가자	000					
	000					
계		점수 : , 계산식 :				
분야별 참여 평가자	000					
계		점수 : , 계산식 :				

주) 중지 공문, 협의 완료 공문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제18호 서식】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번호 : 0000-0000-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기 업 명 : (주) OO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대표자명 : ○ ○ ○

주 소 :

주 업 종 :

유효기간 :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0 . .

중소기업청장

*발급사실 및 발급최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주)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 서류발급

【제19호 서식】 신규고용율

(단위 : 등급)

업 체 명	신규등록 기술인력 ¹ (A)	전체 기술인력 ² (B)	신규 고용율(A/B)	지분율
(주)ㅇㅇ엔지니어링	00명	000명	0.00%	00%
(주)ㅁㅁ엔지니어링				00%
(주)ㅅㅅ엔지니어링				00%
(주)ㄷㄷ엔지니어링				00%

1.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2.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제20호 서식】 자기평가서

－ 자기평가서(업체능력평가 제외)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총괄책임평가자 ○○○ , 분야책임평가자 ○○○, 분야참여평가자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I. 환경평가 가 참여자 능력평가	합 계		67.6	
	1. 총괄책임평가자 (환경)	계	11	
		등 급	3.0	
		경 력	4.0	
		실 적	4.0	
	2. 분야별 책 임 평가자	계	20	
		환경_A (50%)	소 계	10.0
			등 급	3.0
			경 력	3.5
			실 적	3.5
		환경 또는 항만 및 해안 (50%)	소 계	10.0
			등 급	3.0
			경 력	3.5
			실 적	3.5
	3. 분야별 참 여 평가자	계	17	
		환경_1 (50%)	소 계	8.5
			등 급	2.5
			경 력	3.0
			실 적	3.0
		환경_2 (50%)	소 계	8.5
			등 급	2.5
			경 력	3.0
			실 적	3.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I. 환경평가 가 참여 자 능력평가	4. 업무 여유도	계	17	
		총 괄	4	
		분야별 책임평가자	7	
		분야별 참여평가자	6	
	5. 교육훈련	계	1.6	
		교육훈련	1.6	
	6. 과업의 이해도	계	1	
		전차용역	1	
	7. 이적계수	계	—	
		이적현황	—	
II. 환경평가 가 업체 능력평가	합 계		32.4	
	1.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계	14	
		건 수	7	
		금 액	7	
	2. 신용도	계	9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재정상태 건실도	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6	
		개발실적	2	
		투자실적	2	
		활용실적	2	
	4. 공동도급	계	1.0	
		공동도급	1.0	
	5. 업체능력평가	계	2.4	
		총괄 능력평가	2.4	—
	6. 하도급준수	하도급준수	감점	
	7. 청년고용	신규고용율	미적용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체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